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5. 1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5.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6.5.4.
- 다. 상정일자 : 제20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16.5.1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세열

가. 제안이유

동(同)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계획」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全) 동 시행 및 마포구 행정기구 일부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 증원 등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마포구 정원을 “1,305명”에서 “1,38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6명”에서 “1,357명”으로 정원 81명을 증원함. (안 제2조)

- 행정자치부 연차별 확충계획 순증인력 증원 : 8명(사회복지 7명, 행정 1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시행에 따른 증원 : 73명(사회복지)

『 마포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계획(행정자치부) 』

(단위 : 명)

구분	2015~2017년 총 확충규모				2016년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				
	총계	복지직 증원	행정직 증원	인력구조 개선	16년 소계	복지직 증원	행정직 증원	행정직 재배치	자연결원 대체
서울시	658	393	135	130	260	145	50	33	32
마포구	14	8	3	3	9	7	1	1	-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에 반영함.(안 별표 3)

(단위 : 명)

직급별	기관별	현 행	개 정 안	증감
	총 계	<u>1,305</u>	<u>1,386</u>	<u>81</u>
	정무직	1	1	0
	일반직 계	<u>1,298</u>	<u>1,379</u>	<u>81</u>
	3급	1	1	0
	4급	7	7	0
	5급	<u>58</u>	<u>59</u>	<u>1</u>
	6급 이하	<u>1,231</u>	<u>1,311</u>	<u>80</u>
	전문경력관	1	1	0
	별정직 계	5	5	0
	5급 상당	2	2	0
	6급 상당 이하	3	3	0
	연구직	1	1	0

다. 검토보고(김은모 전문위원)

○ 안 제2조에서는 마포구 정원을 “1,305명”에서 “1,386명”으로 하고 집행기

관의 정원을 “1,276명”에서 “1,357명”으로 증원함

(단위 : 명)

직급별	기관별	현 행	개 정 안	증감
	총 계	1,305	1,386	81
	집행기관	1,276	1,357	81
	구의회사무국	29	29	0

- 안 별표 3에서는 총 계란, 일반직 계란 및 6급 이하 계란을 다음과 같이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에 반영함

(단위 : 명)

직급별	기관별	현 행	개 정 안	증감
	총 계	1,305	1,386	81
	5급	58	59	1
	6급 이하	1,231	1,311	80
	기 타(정무직, 3~4급, 전문 경력관, 별정직, 연구직 등)	16	16	0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4.12.8.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2016년 마포구 복지담당 공무원 확 충계획의 일환으로 복지담당 공무원 8명(복지직 7명, 행정직 1명)을 증원시 키고 행정직 1명을 재배치(전환배치)하는 등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확대시행 을 위해, 동조례안 별표 2에서 정원 “1,305명”을 “1,386명”으로 조정하고, 마포구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6명”에서 “1,357명”으로 81명 증가시키고, 별표 3에서는 정원 “1,305명”을 “1,386명”으로 증가하고, 5급 “58명”을 “59 명”으로 1명, 6급은 “1,231명”에서 “1,311명”으로 80명을 증가하여 총 81명 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복지인력 확충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은 2016년도 마포구 기준 인건비는 1,107억 8,859만 9천원이며, 이중 1,037억 3,195만 5천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인력 증원에 따른 부담액은 81명/

23억 4,370만 7천원으로 이중 자치구 부담률 25%를 적용하여 금년 예산에 반영한 바, 이번 사회복지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인력증원 시행년도부터 3년간 만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향후 계속적인 사회복지인력 증원에는 예산확보에 문제가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同) 조례는 2016.4.21.~ 4.26.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도 없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또한 이번 조례개정은 마포구 행정기구 일부 개편 및 그 간 시범동에서 시행해오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전(全) 동 확대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포구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효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